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4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박정하 · 김형동 · 서범수
김승수 · 진종오 · 엄태영
우재준 · 정연욱 · 백종현
한지아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는 영화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 급업자는 영화가 영화상영관에 서 상영이 종료된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 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 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 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 화·독립영화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u>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제98조(과태료) ① ----- ----- ----- ----- -----. <u>1.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 고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온 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 공한 자</u>

<u>1.</u> (생략)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